

제25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행정안전국 주민안전과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600호
- 나. 제출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4. 11. 13.
- 라. 회부일자 : 2024. 11. 13.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금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

3. 설치근거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 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4.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 가. 기금사업의 목표

법령에 의거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으로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각종 재난의 예방 및 사후 관리

- 나. 2025년도 기금사업 개요

풍수해 대비 등 재난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
재난의 긴급대응 및 응급 복구,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에 소요되는 비용

5.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가.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4년도 말 조성액 [㉠]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 말 조성액 [㉡] = [㉢] + [㉠]	비고
		수입 [㉢]	지출 [㉣]	증감 [㉤] = [㉢] - [㉣]		
재난관리기금	5,897,981	1,351,951	672,600	679,351	6,577,332	

나.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5년도 말 조성액 [㉠]	융자금 미회수 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총 조성규모 [㉤] = [㉠] + [㉢] - [㉣]
재난관리기금	6,577,332	0	0	6,577,332

다. 자금 운용 계획

○ 수입계획

(단위 : 천원)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계	1,351,951	1,231,484	120,467
전 입 금	1,155,335	1,112,676	42,659
이자수입	196,616	118,808	77,808

○ 지출계획

(단위 : 천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계	672,600	810,000	-137,400
금천형 소상공인 보증대출 이자	0	160,000	-160,000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용역비	21,400	0	21,400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	650,000	650,000	0
재난대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	0	1,200

6. 검토의견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 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따라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해 2005년도에 설치된 기금임.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입내역은)

전입금 1,155,335천원, 이자수입 196,616천원

총 1,351,951천원이며,

(지출내역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용역비 21,400천원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300,000천원

하수시설물 준설 200,000천원,

안양천 침수 대비 및 복구정비 150,000천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천원

총 672,600천원임.

- 본 기금안은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예방 및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법령에 근거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재난 및 안전관리를 목표로 타당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붙임 : 관련법령 1부. 끝.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 7. 24., 2021. 1. 12.>

[전문개정 2011. 5. 30.]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30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7.>

[전문개정 2010. 6.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9. 26.] [대통령령 제34923호, 2024. 9. 26., 일부개정]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전문개정 2020. 1.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3. 12. 29.]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415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29., 2021.3.18>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1.12.29, 2021.3.18>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2항에 따른 적립액<개정 2011.12.29>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

제3조(기금의 용도)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4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3.18>

1. 재난 예방·대응·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사업
2. 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3. 재난취약 지역·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이나 자문 결과 안전조치에 필요한 장비 구입 비용, 점검이나 자문을 제공한 전문가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5. 법 제3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6. 법 제33조제6호와 관련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 능력 확충사업(이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7. 법 제40조부터 제42조에 따라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나 대피명령을 이행하는 사람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8.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9.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② 영 제74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자연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위치한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
2. 「산림보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에 위치한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
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에 위치한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
4. 그 밖에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
5. 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붕괴 등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

③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기금의 용도 외에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